

南北交流協力關係法規集

1996

統 一 院

목 차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및 後續法令

| | |
|-------------------------------|--------|
|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 5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 19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 49 |
|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 77 |
|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 83 |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 ... | 93 |
| 남북한간수송장비은행승인신청에 관한고시 | 99 |
|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 107 |
|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규정 | 118-1 |
|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 관한지침... | 118-19 |
| 대북투자등에 관한외국환관리지침..... | 118-39 |

南北協力基金法 및 後續法令

| | |
|--------------------|-----|
| 南北協力基金法 | 121 |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 129 |
|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 141 |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147 |

附 錄

<남북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및 後續法令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남북한왕래주민의 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 관한고시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규정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 관한지침

대북투자등에 관한외국환관리지침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制定 1990. 8. 1 法律 第4239號
改正 1990.12.27 法律 第4268號(政府組織法)
1992.12. 8 法律 第4522號(出入國管理法)
1994.12.31 法律 第4850號(對外貿易法)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과 그 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간의 相互交流和 協力を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出入場所”라 함은 北韓으로 가거나 北韓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南韓의 港口·飛行場 기타 場所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곳을 말한다.
2. “交易”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간의 物品의 搬出·搬入을 말한다.
3. “搬出·搬入”이라 함은 賣買·交換·賃貸借·使用貸借·贈與등을 原因으로 하는 南韓과 北韓간의 物品의 移動(단순히 第3國을 경유하는 物品의 移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의 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이 共同으로 行하는 文化·體育·學術·經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濟 등에 관한 諸般活動을 말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南韓과 北韓과의 往來·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 등 南北交流와 協力を 目的으로 하는 行위에 관하여는 正當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第4條(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設置) 南韓과 北韓간의 相互交流 및 協力(이하 “南北交流·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政策을 協議·調整하고,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重要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統一院에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90.12.27>

第5條(協議會의 구성) ①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統一院長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개정 90.12.27>

③委員은 次官 및 次官級 公務員중에서 國務總理가 指名하는 者가 된다.

④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指定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⑤協議會에 幹事1人을 두되, 幹事는 統一院 所屬 公務員중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개정 90.12.27>

第6條(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政策의 協議·調整 및 基本原則의 수립
2.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각종 許可·승인 등에 관한 重要사항의 協議·調整
3. 交易對象品目の 범위 決定
4. 協力事業에 대한 總括·調整
5.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한 지원
6. 南北交流·協力和 관련된 重要사항에 대한 關係部處間의 協調推進
7.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第7條(協議會의 議事) ①協議會의 會議은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協議會의 會議은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協議會의 운영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8條(實務委員會) ①協議會에 上程할 議案을 준비하고, 協議會의 委任을 받은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協議會에 實務委員會를 들 수 있다.

②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9條(南·北韓 往來) ①南韓과 北韓의 住民이 南韓과 北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韓을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이 發給한 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②在外國民이 外國에서 北韓을 往來하는 때에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南韓의 住民이 北韓의 住民 등과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接觸하고자 할 때에는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의 發給節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外國民의 범위와 申告節次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海外同胞 등의 出入保障) 外國國籍을 保有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의 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居住同胞가 南韓에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旅券法에 의한 旅行證明書를 소지하여야 한다.

第11條(南·北韓 往來에 대한 審査) 出入場所에서 南韓과 北韓을 直接 往來하는 南韓과 北韓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12條(交易當事者) 交易(北韓과 第3國間에 物品의 中繼貿易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者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對外貿易法

에 의하여 貿易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交易當事者”라 한다)로 하되, 統一院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交易當事者중 특정한 者를 지정하여 交易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4.12.31>

第13條(搬出·搬入의 승인) 交易當事者가 物品의 搬出·搬入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物品 또는 去來形態·代金決濟方法에 관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第14條(交易對象物品의 公告) 統一院長官은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하여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사항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1.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한 自動承認品目·制限承認品目 또는 禁止品目の 구분
2. 制限承認品目에 관한 제한내용 및 承認節次

第15條(交易에 관한 調整命令 등) ①統一院長官은 交易에 관한 協定の 준수나 物品의 搬出·搬入의 秩序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搬出·搬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개정 90.12.27>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②統一院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交易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第16條(協力事業者) ①協力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承認取消事由 및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協力事業의 승인) ①第16條 規定에 의하여 協力事業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 “協力事業者”라 한다)가 協力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매 事業마다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事業의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力事業의 승인요건과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協力事業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院長官은 協力事業이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協力事業者에게 그가 施行하는 協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力事業者에게 協力事業의 施行內容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第19條(決濟業務의 取扱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

協力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 決濟業務를 취급할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濟業務取扱機關이 행하는 決濟의 범위·방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輸送裝備의 運行) ①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하고자 하는 者は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輸送裝備등의 出入管理)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과 그 乘務員이 出入場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法第69條 내지 第7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92.12.8〉

第22條(通信役務의 제공) ①南北交流·協力の 추진을 위하여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할 수 있다.

②南韓과 北韓間에 제공되는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의 提供者·종류·料金·取扱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檢疫등) ①北韓으로부터 來港하는 船舶·航空機·荷物は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에는 檢疫法 第6條 내지 第28條 및 第33條 내지 第35條의 2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檢疫法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證 또는 假檢疫證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오는 者중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이 疑心되는 者와 傳染病菌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者는 國立檢疫所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4條(南北交流·協力の 支援) 政府는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法에 따라 행하는 南北交流·協力を 위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5條(協調要請) 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고 관련 政策樹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專門家 및 南北交流·協力の 經驗이 있는 者에게 의견의 陳述 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調를 요청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0.12.27>

第26條(다른法律의 準用) ①交易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對外貿易法 등 貿易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②物品의 搬出·搬入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의 賦課·徵收·減免 및 還給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다만, 物品의 搬入에 있어서는 關稅法에 의한 課稅規定, 防衛稅法第4條第1項第1號의 規定 및 다른 法律에 의한 輸入賦課金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③南韓과 北韓間의 投資, 物品의 搬出·搬入 기타 經濟에 관한 協力事業 및 이에 隨伴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法律을 準用한다.

1. 外國換管理法
2. 外資導入法
3. 韓國輸出入銀行法
4. 輸出保險法
5. 對外經濟協力基金法
6. 法人稅法
7. 所得稅法
8. 租稅減免規制法
9. 輸出用原材料에 대한關稅등還給에 관한特例法
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그에 대한 特例를 정할 수 있다.

第27條(罰 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3年 이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を 發給받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會晤·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北韓의 住民과 接觸한 者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物品을 搬出 또는 搬入한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協力事業을 施行한 者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を 發給받거나 第9條第3項, 第13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北韓을 往來한 在外國民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者

③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 科한다.

第29條(刑의 減輕등) 第27條第1項 및 第2項第1號의 罪를 범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30條(北韓住民擬制) 이 法(第9條第1項 및 第11條를 제외한다)의 適用에 있어서 北韓의 路線에 따라 활동하는 國外團體의 構成員은 이를 北韓의 住民으로 본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에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24.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附 則<90.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 則<92.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 則<94.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
| 제정 | 1990. 8. 9 | 대통령령 | 제13071호 |
| 개정 | 1991. 2. 1 | 대통령령 |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
| | 1991. 12. 31 | 대통령령 | 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 | 1993. 3. 6 | 대통령령 |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 | 1993. 3. 30 | 대통령령 | 제13872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
| | 1993. 12. 31 | 대통령령 | 제14078호(교통세법시행령) |
| | 1994. 12. 23 | 대통령령 |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 | 1994. 12. 23 | 대통령령 |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개정 91.2.1, 93.3.30>

1. 관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개정 93.3.30>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4.12.23>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3조 (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원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

할한다. <개정 91.2.1>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인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7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준용규정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등

제9조 (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 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원”을 표기한다.〈개정 91.2.1〉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 · 8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 8면

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2.1〉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2.1〉

1.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다만, 해당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1.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 ③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2.1>
- ④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2.1)

제11조(대리신청) ①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원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문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2.1>

1. 100인이상의 단체 왕래
2. 정치적 목적의 왕래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왕래

제13조 (편의제공) 통일원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1.2.1>

제14조 (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1.2.1>

1. 재발급 신청서
2.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진 2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5조 (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 (방문기간) ① 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9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증명서의 반납 등) ① 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③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된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1.2.1>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

게 제출한 때에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북한방문결과보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개정 91.2.1)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2.1)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1.2.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91.2.1〉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20조(특례조치) 통일원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91.2.1〉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개정 91.2.1〉

제22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91.2.1>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원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91.2.1>

제23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원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1.2.1>

제 4 장 교 역

제25조(교역당사자의 지정) 통일원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 의 의결전에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3.3.6>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1.2.1>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1.2.1>

④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 의 의결

을 거칠 수 있다. <개정 91.2.1, 93.3.6, 94.12.23>

제27조(변경 승인사항 등)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미화 5천달러 상당액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 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3.3.6>

제28조(교역대상 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교역대상물품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3.3.6>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는 미리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3.3.6>

②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2.1, 93.3.6>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조정을 명하거나 교역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통상산업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3.3.6>

제 5 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91.2.1>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개정 91.2.1>

③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32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원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1.2.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개정 91.2.1>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원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30일 이내에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1.2.1>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③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1.2.1>

제37조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 통일원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2.1>

제38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2.1>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③통일원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39조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40조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재정경제원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1.2.1.94.12.23>

제42조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43조 (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

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영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통일원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1.2.1>

②통일원장관은 선박 등의 정기운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2.1>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원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91.2.1>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개정 91.12.31>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소포우편물

3. 유선전기통신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 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개정 91.12.31>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우편물운송법·임시우편단속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12.31>

제49조(수당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1.2.1>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방위세법. 다만,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관세등환급에 관한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⑤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

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12.31>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12.31>

제52조 (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3.12.31>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9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93.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3.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27 총리령 제384호(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재외국민 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3.27>

②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북한방문신고서 등) ①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1.3.27>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3.27>

제8조 (출입신고서 등) 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심 사 확 인 인

출입장소 :
일 자 : 년 월 일
출입심사관 :

15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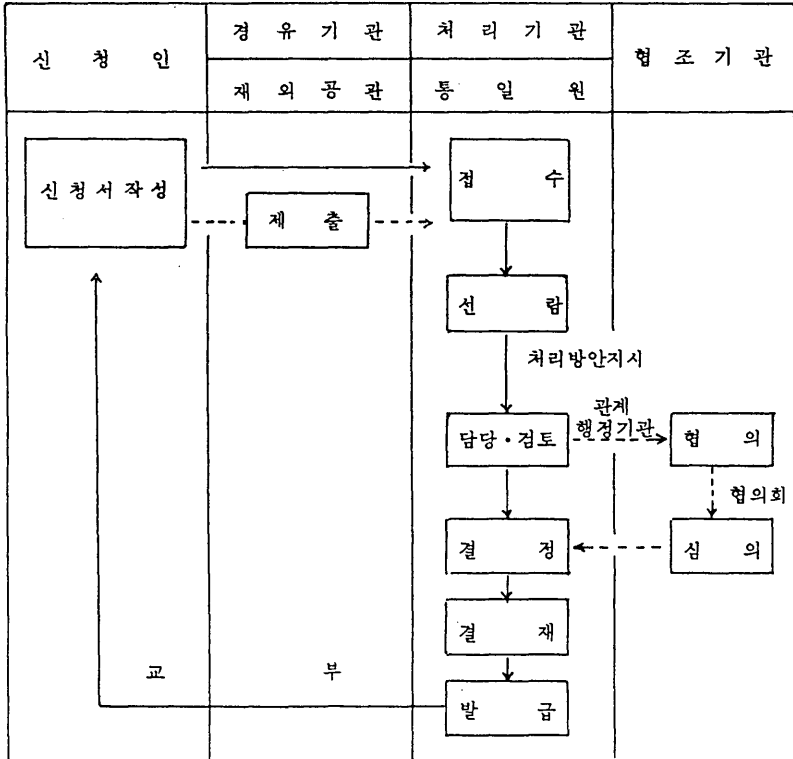
75 mm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3. 병역법 제 62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해당자에 한함)
4.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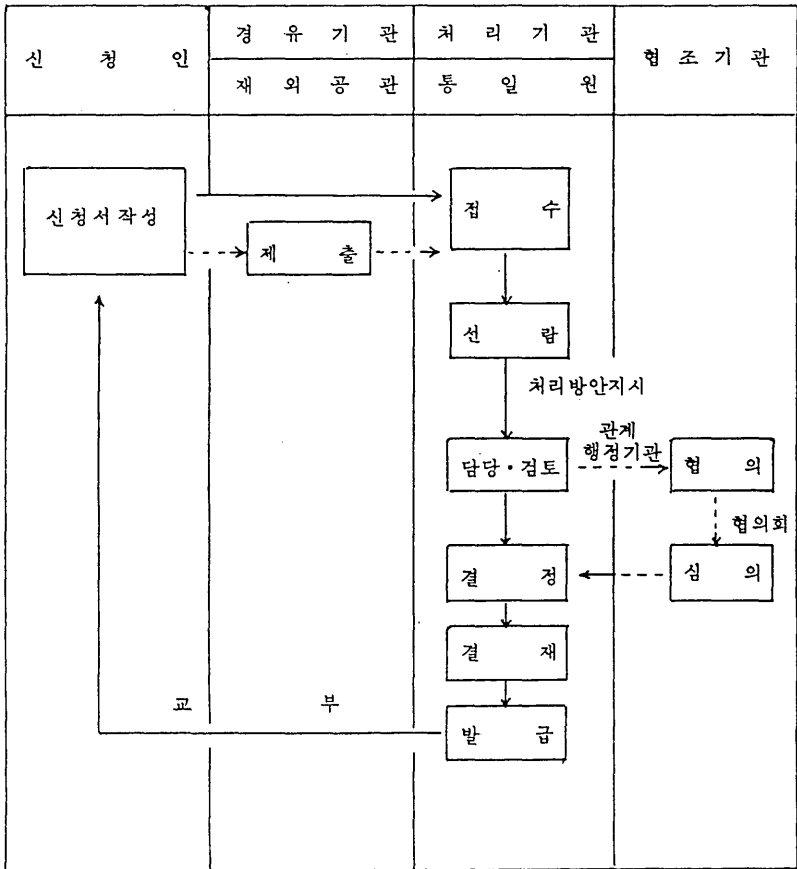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첨부서류 : 1.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2.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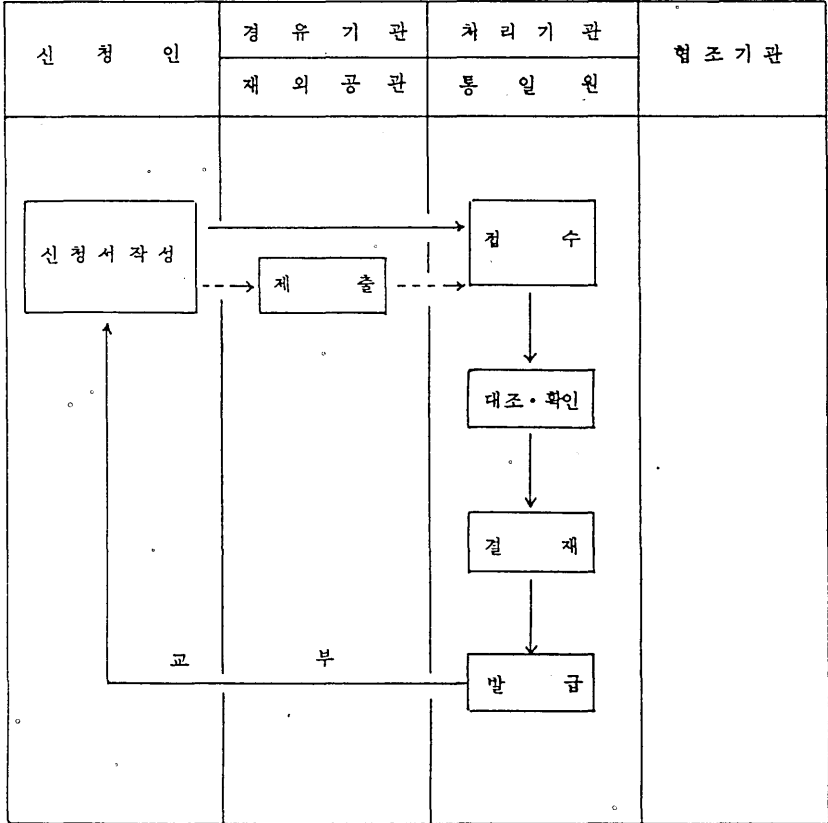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첨부서류 : 1. 증명서 재발급용 사진 2매
2.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4 호서식]

방문기간연장신청서

< 앞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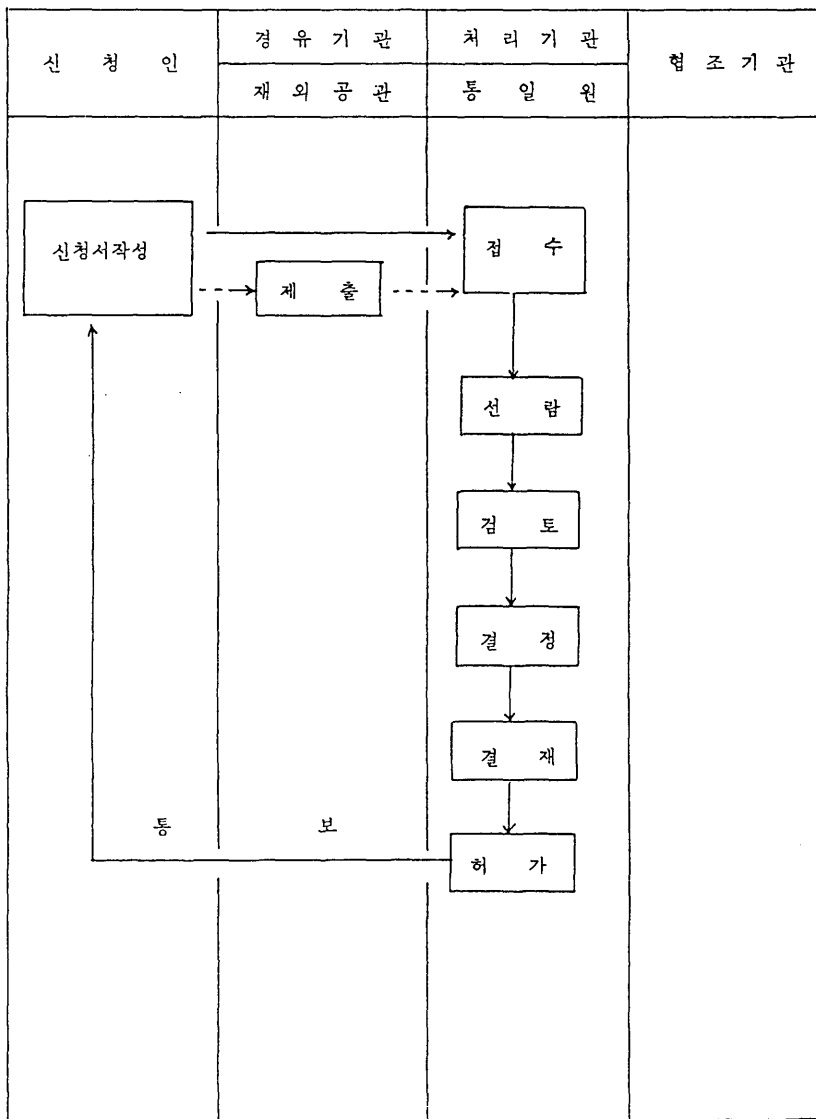
| | | | | | |
|---|--------|-----------|-----------------------------|-----|-----|
| | | 처리기간 | 14 일 | | |
| ①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 | 성 별 | 남·여 |
| | 구증명서번호 | | 생년월일 | | |
| | 주소·연락처 | | | | |
| | 방문지 | | | | |
| ②연장기간 | | | | | |
| 연 장 전 | | | 연 장 후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개월)] | | |
| ③연장사유 | | | | | |
|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 | | | | |
| | | | | | 수수료 |
| | | | | | 없 음 |

11022-00611 민
90.10.12 승인

190 mm × 268 mm
인쇄용지 (특급) 80 g / m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뒷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6 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 | | | | |
|---|---------|-----------------|-------------|--------------------|
| ①보 고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성 별 남·여 | 시 진 3 cm × 4 cm |
| | 주소·연락처 | (전화 :) | | |
| | 직 업 | (전화 :) | | |
| | 여 권 번 호 | 여권유효기간 | | |
| ①방문대상자 (방문기관) (3인부터는 별지작성) | 성 명 | 소 속 및 직 위 | 기 타 | |
| | | | | |
| | | | | |
| ② 방문목적 | | | | |
| ④ 출발 일 | | ⑤ 귀 환 일 | | |
| ⑥ 방문신고미필사유 | | | | |
| ⑦ 방문 및 귀환경로 | | | | |
| ⑧ 방 문 일 정 | | | | |
| 년 월 일 | 방 문 지 역 | 활 동 내 용 및 연 락 자 | | |
| | | | | |
| | | | | |
| | | | | |
| ※ 세부활동내용 및 참고사항은 별지작성 | | | |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첨부서류: 재외공관의 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 | | |
| 년 월 일 | | | | |
| 작성 자 : | | | Ⓢ (또는 서명) | |
| 대사 (총영사) 귀하 | | | | |

11022-00811 민
90.10.12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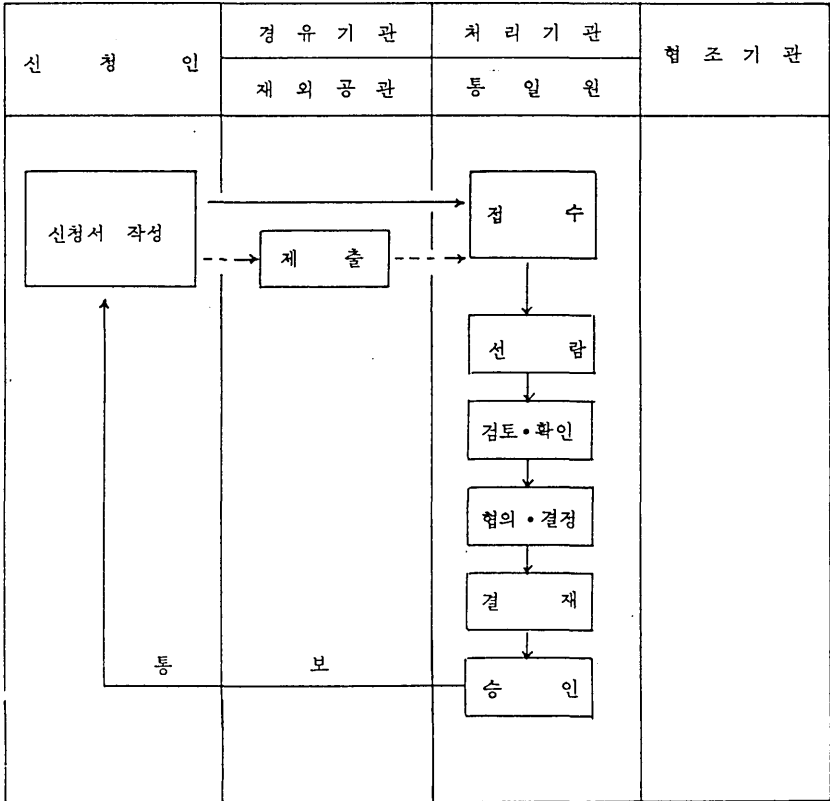
210 mm × 297 mm
인쇄용지 (특급) 80g / m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출 입 신 고 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하고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checkbox"/>속은 적지 마십시오. ● 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십시오. | | | |
| 이름 | 한자이름 | | |
| 생년월일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후단 | 성별 남·여 | |
| 방문증명서번호 | 직장 및 직위 직감명 : 직 위 : | | |
| 거주지 연락처 | | 주소 : 전화번호 | |
| 방문지 연락처 | | 주소 : 이름 : 전화번호 : | |
| 방문목적 | 방문예정기간 | | |
| 공용란 | | | |

11022-01111 민
90.10.12 승인

84 mm × 144 mm
NCR 88g / m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0 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협 력 사 업 자 승 인 증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구분

주 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16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3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협력사업자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원 장 관

인

11022-01411 일
90.10.12 승인

190 mm × 268 mm
인쇄용지 (특급) 120 g / m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1 호서식]

수송장비운행승인서

| | | | | | |
|---|-----|---|-----|--------|--|
| 상호(명칭) | | | | 운행승인번호 |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수송장비의 종 류 | | | | 수송장비명칭 | |
| 운행노선 | | | | | |
| 운행승인 유효기간 | | | | | |
| 운행승인구분 | 정 기 | 회 | 부정기 | 회 | |
| <p>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20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영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판 인</p> | | | | | |

11022-01511 일
99.10.12 승인

190 mm X 268 mm
인쇄용지 (특급) 120 g/㎡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1990. 8.13 통일원고시 제90-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다.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마.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나. 군사상 기밀 및 남한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 다.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라. COCOM 수출 규제 품목
 - 마. 보호문화재 등
 - 바. 반출될 경우 국내산업보호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 물품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된다.
- 가.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나. 검역대상 물품
 - 다.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용에 공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이 허용된다.
- 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5. 반출·입 규제대상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

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7.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는 물품으로서 관계기관
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고 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제정 1990. 8.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고시(통일원고시)에 따라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남한 또는 북한주민이 상대방지역을 왕래할 때 휴대하는 물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지침을 정하여 왕래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요령은 남북한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남·북한주민 이외의 자가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출입경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휴대품 검사

제3조 (휴대품신고서 제출)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화폐등의 신고)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외국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외국화폐, 여행자수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등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등록증을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휴대품 검사) ①세관공무원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주민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입 규제물품의 휴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방법)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

품을 과다하게 소지한 자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휴대품 반출입

제7조 (휴대품 반출입 허용의 범위)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방문목적, 체류기간, 방문자의 직업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휴대품은 반출입을 허용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반출입 규제물품) ①다음의 물품은 반출입을 불허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입금지물품

②다음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여 통일원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출입이 허용된다고 고시된 반출입 제한물품

2. 외국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
하는 외국화폐등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제대상물품중 관계법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
여 그 구체적인 규제의 범위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등의 처리) ①세관공무원은 제7
조에 규정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반출입이 규제되어 반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물
품은 휴대품보관증(별지 제2호서식)을 왕래자에게 교부하
고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반출
입이 규제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은 관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중 반송 또는 반환되
지 않는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과 세

제10조(반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주민이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때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도 포함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이 규제된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승무원의 휴대품 처리 등

제11조(승무원의 반출입 휴대품 처리) 남·북한 주민이 수송장비의 승무원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할 때 휴대하여 반출입되는 물품은 일반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과 같이 처리한다.

제12조(관세법등 관세규정 준용)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별지 제1호서식]

대한민국 세관
왕국주민 휴대품 신고서

199 년 월 일

이 신고서는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를 신속히 하
기위한 것이오니 성실하게 기재하신 후 세관직원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1. 성 명 : | |
| 2. 생년월일 : 년 월 일 | 3. 성별 :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
| 4. 주 소 : | |
| 5. 직 업 : | 6. 국 적 : |
| 7. 방문목적 : | 8. 방문증명서(여권)번호: |
| 9. 방문기간 : | 10. 동반가족수 : 명 |

통관안내

1. 귀하의 방문목적, 방문기간, 직업등을 참작하여 휴대품
의 통관 허용범위가 결정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
요.
2. 휴대품중 반입이 규제되는 물품(총기류 등)은 귀환할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3. 후면 신고대상 물품은 반드시 서면신고 하여야 합니다.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서면신고대상물품

해당란에 (○)표

| 소 지 물 품 | 있음 | 소 지 물 품 | 있음 |
|-----------------------|----|------------------------|----|
| 총포, 도검, 화약등 무기류 | | 국헌, 공안, 풍속을 해할 물품류 | |
| 마약, 대마, 향정신 성 의약품류 | | 화폐, 증권의 위조, 변조, 모조품 | |
| 동물, 식물류 등 검역대상 물품 | | 무선통신용 송·수신 기 | |
| 35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화폐 등 | | | |
| 신고금액 : | | | |

위 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고인 서명 :

| | |
|----------|-------|
| 검사대 번호 : | 검사자 : |
|----------|-------|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별지 제2호서식]

휴대품보관증

보관증번호 :

화물Tag번호 :

| | | | | | | | | |
|---|------------|------|--------|----|-----|------------|--|-----------|
| 성명 | | 생년월일 | 19 . . | | | | | |
| | | 국적 | | | | | | |
| 방문증명서번호 | | 방문기간 | | | | | | |
| 주소 | | | | | | | | |
| <p>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 검사 및 반출입 요령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물품을 보관합니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5px;">담 당</td> <td style="padding: 5px;">19</td> </tr> <tr>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서 울 세 관 장</td> </tr> </table> | | | | | 담 당 | 19 | | 서 울 세 관 장 |
| 담 당 | 19 | | | | | | | |
| | 서 울 세 관 장 | | | | | | | |
| 포장종류 | 수량 | 품명 | 증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보관물품인도내역 | | | |
|----------|--|---------------|-----|
| 보관증 번호 | | 인도물품 | |
| 화물Tag번호 | | | |
| 출입국 일시 | | 성명 및 서명 | (인)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
승인절차에관한고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 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정 1990. 9. 25 통일원고시 제90-2호
개정 1991. 5. 6 통일원고시 제91-2호
개정 1994. 12. 1 통일원고시 제94-4호
개정 1995. 1. 3 통일원고시 제95-1호
개정 1996. 3. 5 통일원고시 제96-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을 공고하고 남북한 교역물품의 반출·입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분류) 이 고시의 품목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제3조(반출·입 제한승인품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은 반출·입 제한승인품목으로 본다.

1.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통합공고에서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
 2. 반출물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위탁가공용 기계·장치·설비
- 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교역(Compensation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trade),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교역으로서, 대응물품이 반입 제한승인품목인 경우

나. 1회 미화 100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미화 300만달러 이상의 반출

다. 설비 반출대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생산물품이나 가공비 등으로 상계하는 경우

3. 반입물품으로서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4.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계기한 품목

5.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품목

제4조 (반출·입 자동승인품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제한승인품목 이외의 품목은 반출·입 자동승인품목으로 본다.

제5조 (반출·입의 승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제한승인품목의 반출·입은 통일원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입 자동승인 품목의 반출·입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승인권한을 위탁한다.

제6조 (반출·입 승인실적의 보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하여 반출·입을 승인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승인서상에 “남북한교역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승인결과를 3일이내에 통일원장관 및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반출·입 승인절차) 반출·입 승인절차에 관하여 법·동법시행령 및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이 고시 시행이전에 승인된 반출·입은 이 고시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반입 제한승인 품목

| 연번 | 품 목 번 호 HSK CODE | 품 명 |
|----|---------------------|----------------------------|
| 1 | 0102-10-1000 | 소(종우/젓소) |
| 2 | 0102-10-2000 | 소(종우/육우) |
| 3 | 0102-10-9000 | 소(종우/기타) |
| 4 | 0201-10-0000 | 쇠고기(신선·냉장/도체·이분도체) |
| 5 | 0201-20-0000 | 쇠고기(신선·냉장/뼈채 절단) |
| 6 | 0201-30-0000 |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
| 7 | 0202-10-0000 | 쇠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
| 8 | 0202-20-0000 | 쇠고기(냉동/뼈채 절단) |
| 9 | 0202-30-0000 |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
| 10 | 0203-21-0000 | 돼지고기(냉동/도체·이분도체) |
| 11 | 0203-22-0000 | 돼지고기(냉동/넙적다리·어깨살/ 뼈채절단) |
| 12 | 0203-29-0000 | 돼지고기(냉동/기타) |
| 13 | 0207-12-0000 | 닭고기(미절단/냉동) |
| 14 | 0207-14-1010 | 닭고기(다리/냉동) |
| 15 | 0207-14-1020 | 닭고기(가슴/냉동) |
| 16 | 0207-14-1030 | 닭고기(날개/냉동) |
| 17 | 0207-14-1090 | 닭고기(기타/냉동) |
| 18 | 0207-33-0000 | 오리고기(냉동/미절단) |
| 19 | 0207-36-1000 | 오리고기(냉동/절단육) |
| 20 | 0301-99-4000 | 돔(활어)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연번 | 품 목 번 호 HSK CODE | 품 명 |
|----|---------------------|--|
| 21 | 0301-99-9050 | 농어(활어) |
| 22 | 0301-99-9070 | 미꾸라지(활어) |
| 23 | 0303-79-1000 | 명태(냉동) |
| 24 | 0303-79-3000 | 갈치(냉동) |
| 25 | 0303-79-6000 | 조기(냉동) |
| 26 | 0303-79-9093 | 홍어(냉동) |
| 27 | 0303-79-9099 | 기타(냉동) |
| 28 | 0304-20-1000 | 명태 필레트(냉동) |
| 29 | 0306-23-3000 |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
| 30 | 0307-49-1020 | 오징어(냉동) |
| 31 | 0402-10-1010 | 탈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0.5% 이하) |
| 32 | 0402-10-1090 |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
| 33 | 0402-10-9000 |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지방 분 1.5% 이하) |
| 34 | 0402-21-1000 | 전지분유(설탕·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초과) |
| 35 | 0402-21-9000 |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
| 36 | 0402-29-0000 | 분유(설탕·감미료 첨가/농축/ 지방분 1.5% 초과) |
| 37 | 0402-91-1000 | 무당연유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연번 | 품목번호 HSK CODE | 품명 |
|----|------------------|-----------------------------------|
| 38 | 0402-91-9000 | 연유(무당연유 이외) |
| 39 | 0402-99-1000 | 가당연유 |
| 40 | 0402-99-9000 | 연유(가당연유 이외) |
| 41 | 0403-90-1000 | 버터밀크 |
| 42 | 0404-10-1000 | 유장분말 |
| 43 | 0404-10-9000 | 유장(유장분말 이외) |
| 44 | 0405-10-0000 | 버터(밀크에서 얻어진 것) |
| 45 | 0405-90-0000 |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의 지와유 (버터이외) |
| 46 | 0408-99-0000 |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이외) * 닭의 것 |
| 47 | 0409-00-0000 | 천연꿀 |
| 48 | 0506-90-2000 | 꿀분 |
| 49 | 0701-10-0000 | 감자(종자용) |
| 50 | 0701-90-0000 | 감자(종자용 이외) |
| 51 | 0703-10-1000 | 양파(신선·냉장) |
| 52 | 0703-20-0000 | 마늘(신선·냉장) |
| 53 | 0709-60-0000 | 고추류(신선·냉장) |
| 54 | 0711-90-1000 | 마늘(일시저장) |
| 55 | 0711-90-5091 | 기타채소(일시저장/고추류의 것) |
| 56 | 0712-20-0000 | 양파(건조) |
| 57 | 0712-90-1000 | 마늘(건조) |
| 58 | 0712-90-2091 | 단옥수수(종자용)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연번 | 품 목 번 호 HSK CODE | 품 명 |
|----|---------------------|---------------------|
| 59 | 0712-90-2092 | 단옥수수(기타) |
| 60 | 0713-31-1000 | 녹두(건조/종자용) |
| 61 | 0713-31-9000 |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
| 62 | 0713-32-1000 | 팥(건조/종자용) |
| 63 | 0713-32-9000 | 팥(건조/종자용 이외) |
| 64 | 0714-10-1000 | 매니옥(신선) |
| 65 | 0714-10-2010 | 매니옥 칩(건조) |
| 66 | 0714-10-2020 | 매니옥 펠리트(건조) |
| 67 | 0714-10-2090 | 매니옥(칩·펠리트 이외/건조) |
| 68 | 0714-10-3000 | 매니옥(냉장) |
| 69 | 0714-20-1000 | 고구마(신선) |
| 70 | 0714-20-2000 | 고구마(건조) |
| 71 | 0714-20-3000 | 고구마(냉장) |
| 72 | 0714-20-9000 | 고구마(신선·건조 고구마 이외) |
| 73 | 0714-90-9090 | 서류(기타) |
| 74 | 0802-31-0000 | 호두(탈각하지 아니한 것) |
| 75 | 0802-32-0000 | 호두(탈각한 것) |
| 76 | 0802-40-1000 |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
| 77 | 0802-40-2000 |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
| 78 | 0802-90-1010 |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
| 79 | 0802-90-1020 | 잣(탈각한 것/신선·건조) |
| 80 | 0805-10-0000 | 오렌지(신선·건조) |
| 81 | 0805-20-1000 | 감귤(신선·건조)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연번 | 품 목 번 호 HSK CODE | 품 명 |
|-----|---------------------|--|
| 82 | 0805-20-9000 | 맨더린류(감귤 이외/신선·건조) |
| 83 | 0805-90-0000 | 감귤류(오렌지·맨더린류·레몬· 그레이프 푸르트 이외/신선·건조) |
| 84 | 0810-90-3000 | 대추(신선) |
| 85 | 0813-40-2000 | 대추(건조) |
| 86 | 0902-10-0000 | 녹차(발효하지 아니한 것/3kg 이하 포장) |
| 87 | 0902-20-0000 | 녹차(기타/발효하지 아니한 것) |
| 88 | 0904-20-1000 | 고추(건조/분쇄하지 아니한 것) |
| 89 | 0904-20-2000 | 고추(건조/분쇄한 것) |
| 90 | 0910-10-0000 | 생강 |
| 91 | 1002-00-1000 | 호밀(종자용) |
| 92 | 1003-00-1000 | 맥주맥 |
| 93 | 1003-00-9010 | 겉보리 |
| 94 | 1003-00-9020 | 쌀보리 |
| 95 | 1003-00-9090 | 보리(맥주맥·겉보리·쌀보리 이외) |
| 96 | 1004-00-1000 | 귀리(종자용) |
| 97 | 1005-10-0000 | 옥수수(종자용) |
| 98 | 1005-90-1000 | 옥수수(사료용) |
| 99 | 1005-90-2000 | 옥수수(팝콘용) |
| 100 | 1005-90-9000 | 옥수수(종자용·사료용·팝콘용 이외) |
| 101 | 1006-10-0000 | 벼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

| 연번 | 품 목 번 호 HSK CODE | 품 명 |
|-----|---------------------|--------------------------------|
| 102 | 1006-20-1000 | 메현미 |
| 103 | 1006-20-2000 | 찰현미 |
| 104 | 1006-30-1000 | 맷쌀 |
| 105 | 1006-30-2000 | 참쌀 |
| 106 | 1006-40-0000 | 쇄미 |
| 107 | 1007-00-1000 | 수수(중자용) |
| 108 | 1008-10-0000 | 메밀 |
| 109 | 1008-90-0000 |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
| 110 | 1102-30-0000 | 쌀가루 |
| 111 | 1102-90-1000 | 보리가루 |
| 112 | 1102-90-9000 | 곡분(쌀·호밀·옥수수·밀·메슬 린·보리가루 이외) |
| 113 | 1103-11-0000 | 밀(분쇄물 및 조분) |
| 114 | 1103-12-0000 | 귀리(분쇄물 및 조분) |
| 115 | 1103-13-0000 | 옥수수(분쇄물 및 조분) |
| 116 | 1103-14-0000 | 쌀(분쇄물 및 조분) |
| 117 | 1103-19-1000 | 보리(분쇄물 및 조분) |
| 118 | 1103-19-9000 | 곡물(기타/분쇄물 및 조분) |
| 119 | 1103-21-0000 | 밀(펠리트) |
| 120 | 1103-29-1000 | 쌀(펠리트) |
| 121 | 1103-29-2000 | 보리(펠리트) |
| 122 | 1103-29-9000 | 곡물(기타/펠리트)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연번 | 품목번호 HSK CODE | 품명 |
|-----|------------------|-----------------------------|
| 123 | 1104-11-0000 | 보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
| 124 | 1104-12-0000 | 귀리(압착 또는 플레이크) |
| 125 | 1104-19-1000 | 쌀(압착 또는 플레이크) |
| 126 | 1104-19-9000 |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
| 127 | 1104-21-0000 | 보리(압착·플레이크 이외) |
| 128 | 1104-22-0000 | 귀리(압착·플레이크 이외) |
| 129 | 1104-23-0000 | 옥수수(압착·플레이크 이외) |
| 130 | 1104-29-1000 | 율무(압착·플레이크 이외) |
| 131 | 1104-29-9000 | 곡물(기타/압착·플레이크 이외) |
| 132 | 1105-10-0000 | 감자(분, 조분과 분말) |
| 133 | 1105-20-0000 | 감자(압착·플레이크 및 펠리트) |
| 134 | 1107-10-0000 | 맥아(볶지 아니한 것) |
| 135 | 1107-20-1000 | 맥아(볶은 것/훈연한 것) |
| 136 | 1108-11-0000 | 밀 전분 |
| 137 | 1108-12-0000 | 옥수수 전분 |
| 138 | 1108-13-0000 | 감자 전분 |
| 139 | 1108-14-0000 | 매니옥 전분 |
| 140 | 1108-19-1000 | 고구마 전분 |
| 141 | 1108-19-9000 | 전분(밀·옥수수·감자·매니옥· 고구마 이외) |
| 142 | 1108-20-0000 | 이눌린 |
| 143 | 1201-00-1000 |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 144 | 1201-00-2000 | 대두(식용)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연번 | 품 목 번 호 HSK CODE | 품 명 |
|-----|---------------------|---------------------------|
| 145 | 1201-00-9000 | 대두(기타) |
| 146 | 1202-10-0000 | 낙화생(미탈각) |
| 147 | 1202-20-0000 | 낙화생(탈각) |
| 148 | 1207-40-0000 | 참깨 |
| 149 | 1211-20-1100 | 수삼 |
| 150 | 1211-20-1210 | 백삼(본삼) |
| 151 | 1211-20-1220 | 백삼(미삼) |
| 152 | 1211-20-1240 | 백삼(잡삼) |
| 153 | 1211-20-1310 | 홍삼(본삼) |
| 154 | 1211-20-1320 | 홍삼(미삼) |
| 155 | 1211-20-1330 | 홍삼(잡삼) |
| 156 | 1211-20-2210 | 홍삼분 |
| 157 | 1211-20-2220 | 홍삼 타브렛·캡슐 |
| 158 | 1211-20-2290 | 홍삼분말(홍삼분·타브렛·캡슐 이외) |
| 159 | 1211-20-9100 | 인삼잎 및 줄기 |
| 160 | 1211-20-9200 | 인삼종자 |
| 161 | 1211-20-9900 | 인삼(인삼근·분말·잎·줄기· 종자 이외) |
| 162 | 1214-90-1000 | 사료용 근채류 |
| 163 | 1214-90-9090 | 기타 사료용 식품(알팔파 베일 이외) |
| 164 | 1302-19-1210 | 홍삼정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연번 | 품목번호 HSK CODE | 품명 |
|-----|------------------|--|
| 165 | 1302-19-1220 | 홍삼정분 |
| 166 | 1302-19-1290 | 홍삼엑스(홍삼정·홍삼정분 이외) |
| 167 | 1515-50-000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
| 168 | 1605-90-1070 | 골뱅이(밀폐용기에 넣은 것) |
| 169 | 1702-11-1000 | 유당 |
| 170 | 1702-19-1000 | 유당 |
| 171 | 1702-90-1000 | 인조꿀 |
| 172 | 1806-90-229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기타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가루 의 것은 제외) |
| 173 | 1806-90-2999 | 기타 조제식품(오트밀의 것 및 보 리가루의 것은 제외) |
| 174 | 1901-20-1000 |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
| 175 | 1901-20-2000 |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보리의 것) |
| 176 | 1901-20-9000 |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보리가루의 것 이외) |
| 177 | 1901-20-9020 | 기타(보리의 것) |
| 178 | 1901-90-9091 |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
| 179 | 1901-90-9099 | 기타 조제식료품(쌀가루·보리가루 의 것 이외) |

남북 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연번 | 품 목 번 호 HSK CODE | 품 명 |
|-----|---------------------|---|
| 180 | 1902-19-2000 | 당면 |
| 181 | 2008-11-9000 | 낙화생조제품(피넛버터 이외) |
| 182 | 2009-11-1000 | 오렌지주스(냉동/농축) |
| 183 | 2009-11-9000 | 오렌지주스(냉동/농축 이외) |
| 184 | 2009-19-1000 | 오렌지주스(냉동 이외/농축) |
| 185 | 2009-19-9000 | 오렌지주스(냉동 이외/농축 이외) |
| 186 | 2009-30-9000 | 감귤류주스(단일 감귤류주스/레몬·라임 이외) |
| 187 | 2103-90-9040 | 매주 |
| 188 | 2106-90-3021 | 홍삼차 |
| 189 | 2106-90-3029 |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
| 190 | 2106-90-9091 | 로얄제리 |
| 191 | 2202-90-1000 | 인삼음료 |
| 192 | 2207-10-9010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콜(조주정 이외/알콜 용량 80% 이상/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
| 193 | 2301-10-1000 | 육, 설육의 분, 조분, 펠리트(비식용) |
| 194 | 2309-90-1091 | 기타 배합사료(대용유의 것) |
| 195 | 2309-90-2010 | 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 이외) |
| 196 | 2309-90-2020 | 보조사료(향미제 주원료) |
| 197 | 2309-90-2099 | 보조사료(무기물·광물질·향미제 이외 주원료) *수입자동승인품목 이외 |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 연번 | 품목번호 HSK CODE | 품명 |
|-----|------------------|--|
| 198 | 2309-90-9000 | 사료용 조제품(개·고양이용 이외/ 배합사료·단미·보조사료·사료첨 가제 이외) |
| 199 | 3301-90-4520 |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
| 200 | 3505-10-3000 | 배소전분 |
| 201 | 3505-10-4000 |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 |
| 202 | 3505-10-5000 | 에테르화 및 에스테르화 전분 |
| 203 | 3505-10-9000 | 기타 변성전분(기타) |
| 204 | 3505-20-1000 | 전분 글루 |
| 205 | 3505-20-2000 | 텍스트린 글루 |
| 206 | 3505-20-9000 | 기타 글루 |
| 207 | 5001-00-0000 | 누에고치 |
| 208 | 5002-00-1010 | 생사(20 데시텍스 이하) |
| 209 | 5002-00-1020 | 생사(백잠사/20 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 |
| 210 | 5002-00-1030 | 생사(백잠사/25.56 데시텍스 초과 28.89 데시텍스 이하) |
| 211 | 5002-00-1040 | 생사(백잠사/28.89 데시텍스 초과 36.67 데시텍스 이하) |
| 212 | 5002-00-1050 | 생사(백잠사/36.67 데시텍스 초과) |
| 213 | 5004-00-0000 | 견사 |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정 1994. 6.20 통일원고시 제94-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간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 운행승인(이하 “운행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운행승인의 신청)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통일원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제2조 (대리승인신청) 대리인이 운행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제1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에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변경승인신청) 운행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운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에 제1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중 변경사항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유효기간 만료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추가자료 요구) 통일원장관은 운행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1조의 운행승인신청서류외에 운행승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서식]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

〈앞면〉

| | | | |
|---|--------|--------------------|-----|
| |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서번호) | |
| 수송장비의종류 | | 수송장비명칭 | |
| 운행목적 | | | |
| 운행기간 | | | |
| 운행예정노선 | | | |
| 운행계획개요 | | | |
|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뒷면</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 | | |
| 통일원장관귀하 | | 수수료 | |
| | | 없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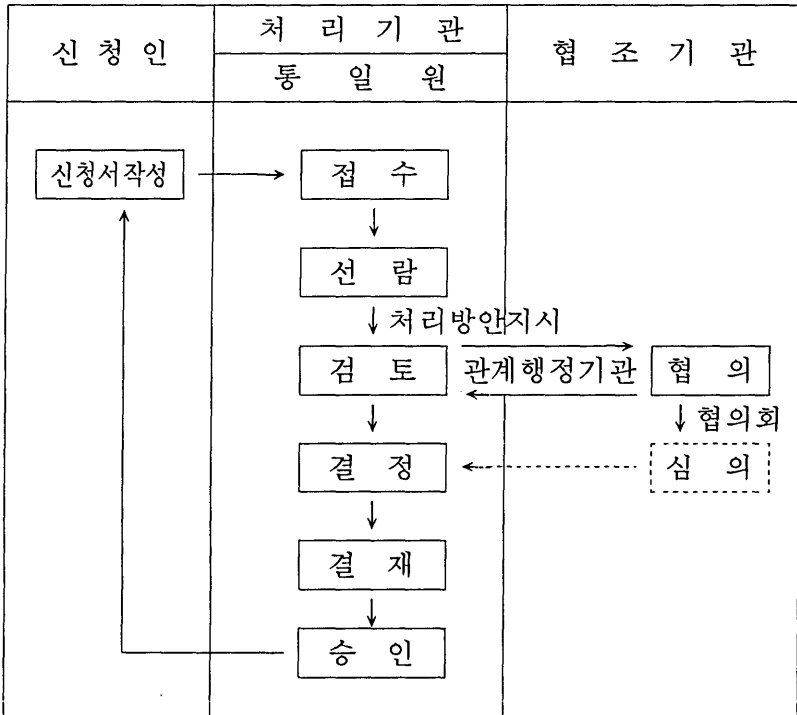
11313-02511민
94.5.3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 첨부서류 1. 운행계획서(운행경위를 포함한다)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부
 3.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서류(통일원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영 제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수송장비은행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서

<앞면>

| | | | |
|---|--------|------------------------|-----|
| |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표자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서번호) | |
| 변경전승인번호 | | 변경전승인일자 | |
| 변경내용(변경을 요하는 사항만 기입하십시오) | | | |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 |
| 변경 사유 | | | |
|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은행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뒷면</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일원장관귀하</p> | | | |
| | | 수수료 |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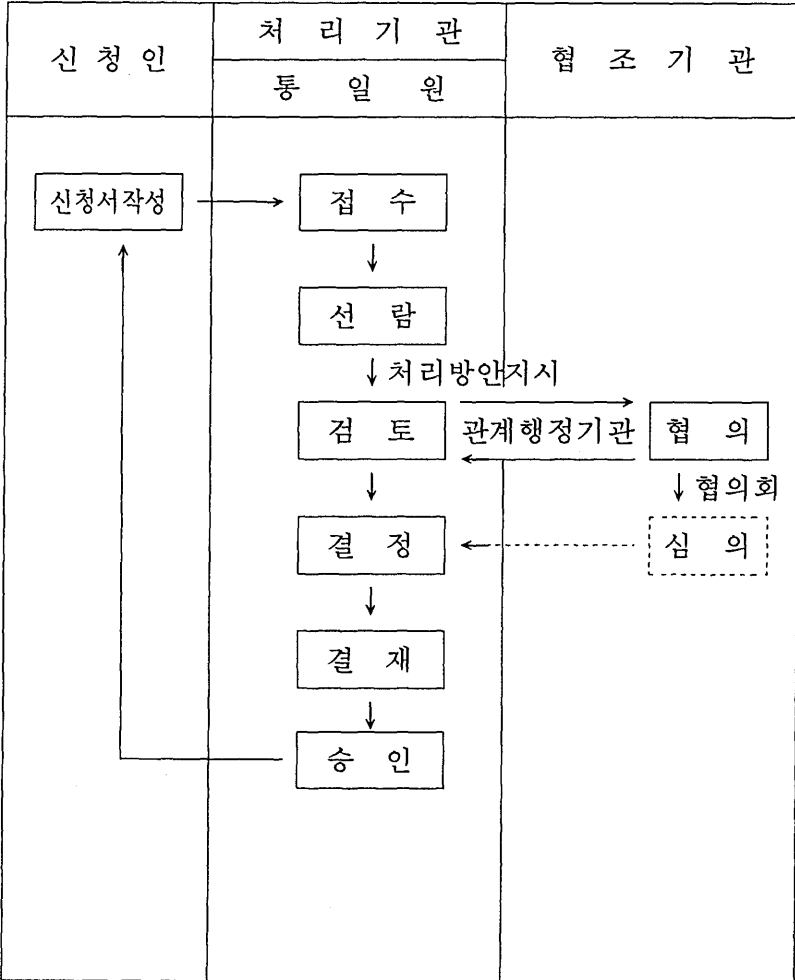
11313-02611민
94.5.3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m²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첨부서류 1. 변경사항 해당서류 각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제정 1994. 2. 5 관세청고시 제94-86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남북 교역물품 통관에 따른 처리지침을 정하여 남북물자 교류시 통관업무의 원활과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입물품”이라함은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2. “반출물품”이라함은 남한에서 직접 북한으로 운송(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어 반출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물품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승인을 받은 물품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출입물품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로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면제 요건에 부합되는 물품. 다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1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별표 3-2 제1호 가목, 나목, 다목에 규정된 휴대품 및 이사물품은 제외한다.

제 2 장 남북교역물품의 통관

제4조 (물품의 장치)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관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나 통관장등 지정된 장치 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

②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은 당해물품의 제조공장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5조 (반입절차) ①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자는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서 양식 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통

관사무처리규정 제3-2-1조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 (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 (내국세등) ①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물품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관장이 이를 징수한다.

제8조 (물품가격의 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세등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은 관세평가시행세칙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구상무역방식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2방법 이하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가격을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표시된 당해 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반출 및 환급절차) ①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세관장에게 신고(수출신고서 양식사용)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중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상의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략물자 수출입통관 요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심사하고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환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 승인)을 받은 대북한 위탁가공 반출물품(반출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에서 제조·가공한 후 재반입 할 것을 전제로 반출한 물품 및 제3국으로 수출할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세등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북한 위탁가공 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북한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구비조건등의 확인) 남북교역물품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승인, 추천 또는 기

타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남북교역물품의 표시) 남북교역물품을 반출입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반출입 신고서 상당 우측여백에 날인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출입승인 면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의 준용)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면제대상 반출입 물품의 통관은 수출입 승인면제물품 통관사무처리 규정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 3 장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제13조 (원산지 확인)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물품의 원산지 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면허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증명서의 발행기관 및 관계기관에 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4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1. 과세가격(중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2. 우편물(관세법 제15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휴대품이나 별송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과세가격 기준은 동일한 송화인과 수화인간에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과세가

격을 합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적용한다.

제15조(원산지 확인에 있어 직접운송원칙) ①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제3국의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등이 이루어지고 이 들이외의 다른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
2. 박람회, 전시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당해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
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세관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의 수출 대상국 및 선화증권상의 운송경로와 실제 운송 경로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입물품이 북한에서 적출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되었는지 여부를 반입물품 운송선박의 선장 확인 항해일지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원산지 증명서) ①원산지 증명서는 발송인, 수화인, 발행번호, 발행일자, 당해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수송수단, 산지, 수출대상국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하며,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례에 맞게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②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된 것이어야 한다.

③원산지 증명서는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제17조 (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세관장은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여행자 휴대품등 수입승인면제물품을 포함한다.) 중 원산지표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시 원산지 표시가 부착된 상태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포장물품등에 부착 또는 인쇄된 선전문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1. 관세법 제146조(수출입의 금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
 5.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통일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물품 및 그 부장 물품은 당해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의 확인등에 대하여는 원산지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18조(심리의뢰) 세관장은 반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리의뢰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표시 한 때
2.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자료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작성 또는 구비하여 제출한 때

제19조(반출입 통계) ①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통계는 무역통계에 관한 기본지침에 불구하고 무역통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②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통계작성은 별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보 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반출입실적(월별)
2.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반송, 심리의뢰(즉시)
3. 기타 반출입물품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제2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법 및 관세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 2.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비조건의 확인) 제10조에서 구비조건의 확인이란 함은 통일원장관의 승인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남북교역물품통관요령(관세청예규 제137-0-00-219, '90. 9. 4)은 폐지한다.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정 1994. 12. 1 통일원고시 제94-2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협력사업” 중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 다음 각목의 1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
- 가. 남과 북의 법률에 의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외화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증권 및 외화채권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투자
지역내의 지급수단, 증권 및 채권

- 나. 외자도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
 - 다. 토지, 건물 및 이의 사용·수익권
 - 라. 공업소유권, 저작권, 기술공정 등 지적재산권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기타 에너지의
개발 또는 사용권 등 자연자원을 조사·개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바. 기타 사업 당사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합의하는
모든 형태의 재산 및 재산권
2. 상대방 지역에 제1호 각목의 1을 단독으로 또는 상대
방지역 주민 이외의 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행위
3. 주된 협력사업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1종 통일원장관이 사업의 규모, 계속성, 기타 형
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으로 인
정하는 행위
- 가. 상대방의 주민을 고용하는 행위
 - 나.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용
역을 제공받는 행위
 - 다.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거나 조사·연구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행위

4. 기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협력사업

제 4 조 (사업실적 인정범위) 영 제30조제2호의 “사업실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인 경우 해당 협력사업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주된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생산에 직접 관련되는 기계·설비의 생산실적 또는 수출입실적
2.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해당 협력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영업실적(사업 수주실적 포함)
3. 기타 특수업종인 경우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인정하는 사업실적

제 5 조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시 구비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의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협력사업의 개요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방식, 사업 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 생산능력, 예상 투자규모·투자비율, 자금조달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3. 의향서 사본 1부
4.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예관한규정

5.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 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 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구비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원장관은 매사업별로 특정 구비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7 조 (협력사업자의 방북) ①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 이후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관계자가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협력사업자는 증명서 발급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원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따라 매 귀환 후 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북 7일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1부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통일원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영 제34조제1항제5호의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승인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산업입지조건 등에 관한 현지 타당성 조사 결과 1부(수송, 전력, 통신, 항만, 용수, 노동력 등을 포함)
3. 제3조제2호의 방법에 의한 대북투자의 경우 북한 당국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에 제출할 “외국인기업 창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1부

제 9 조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 영 제34 조제2항에 의한 “기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투자계획 (현물출자가 수반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필요한 반출입 물자의 상세 목록 포함)
 - 나. 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 다. 생산 및 판매계획
 - 라. 조직 및 인력계획
 - 마. 추진일정 계획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사업상대자의 연혁·조직·사업실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북한측 당사자가 북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법인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사업상대자와 최종 협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존속기간 및 적용법규
 - 나. 협력사업 당사자의 성명, 주소
 - 다. 총투자액, 출자비율, 등록자본금 및 증감가부, 출

자방식, 출자자산평가방법, 출자기간, 출자금의 양도조건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 의결정족수, 이사회 소집절차 등 회사의 조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마. 회사 등의 업종, 생산규모, 생산제품의 판매·처리방법, 자재조달 방법

바. 당사자의 임무

사. 근로자의 고용, 해고, 임금에 관한 사항

아. 결산 및 이윤의 분배·적립, 송금보장에 관한 사항

자. 세금, 회계에 관한 사항

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카. 효력발생 조건

타. 회사 등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파.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및 이로 인한 의무불이행의 해결방법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

나. 인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성질상 특정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기재사항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일원장관은 신청서류별로 특정사항의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사업 승인 이후의 투자절차)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협력사업 승인 이후 투자절차에 관하여는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준용하되,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의한다.

제12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영 제38조제1항제6호의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 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 이내)
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
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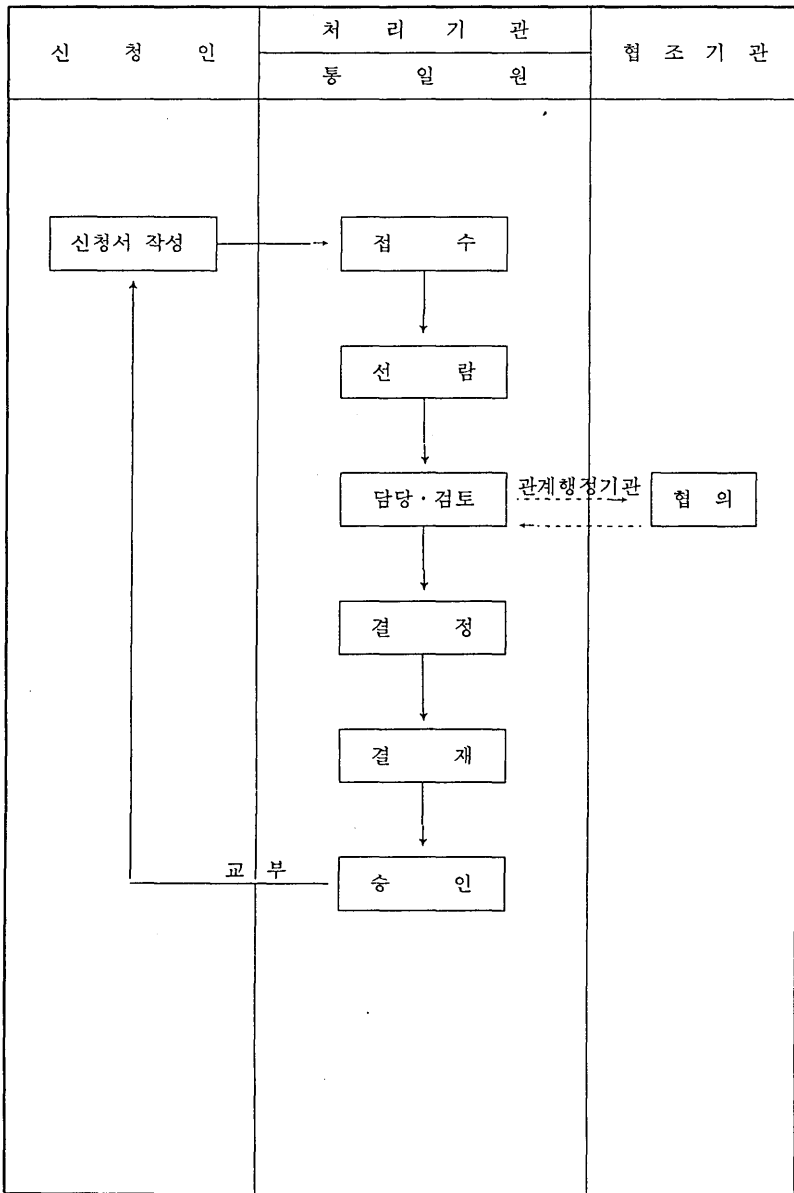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규정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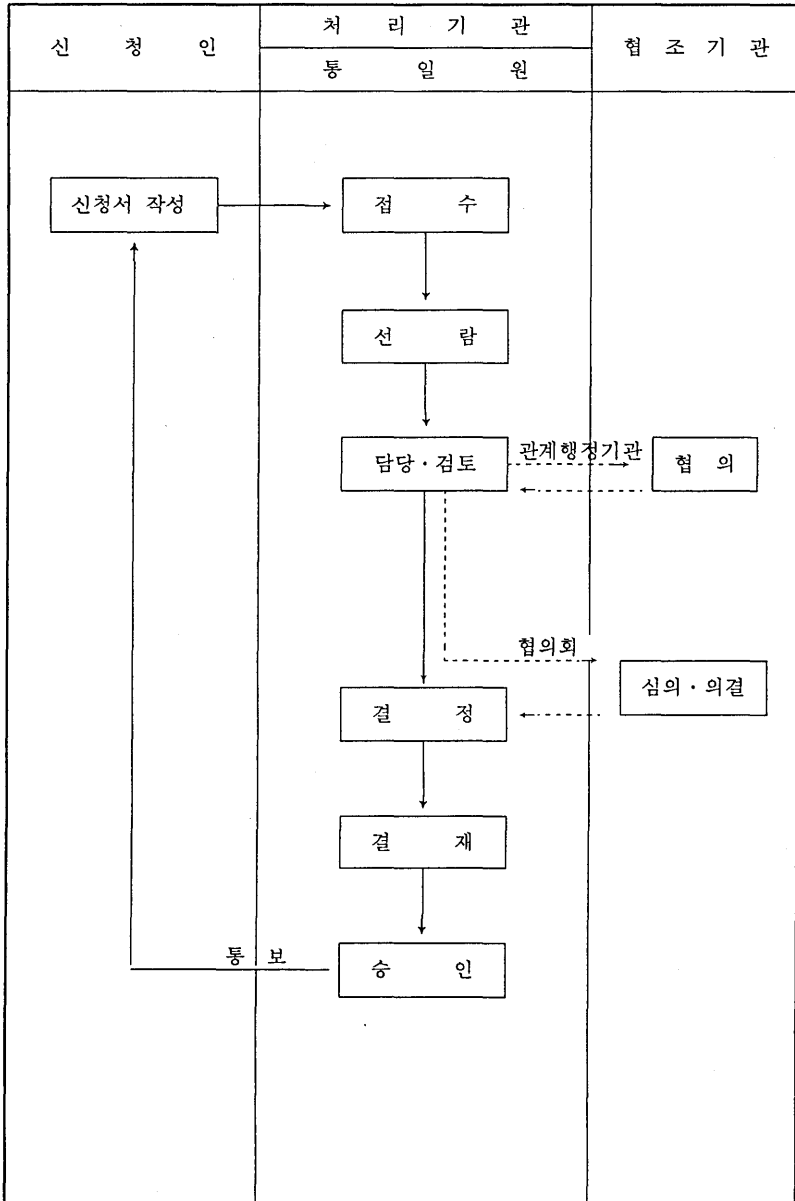
<뒷면>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예관한규정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
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 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정 1994. 12. 1 통일원고시 제94-3호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해 국내기업(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경제분야의 법인 및 개인기업을 말한다) 및 경제단체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 대리점, 출장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할 승인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무소의 기능) 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 단, 남북한 당국이 사무소의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한 때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1. 통신연락 등 업무연락
2. 시장조사, 연구활동,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및 자문활동 등의 비영업적 활동
3.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가 위임한 범위내의 북한측 거래 당사자와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와 지불, 물자의 인도와 인수 등의 위임대리 업무

제 3 조 (사무소의 설치승인) ①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무소설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2. 사무소의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사무소의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의화경비명세서와 경비조달계획서, 사무기기 등 사무소 운용과 주재원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결과
5. 재정경제원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4 조 (승인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2.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3.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 5 조 (승인 처리절차) ① 통일원장관은 제4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의 사무소 설치를 승인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내용변경 신고) ① 사무소를 설치한 후 그 명칭 또는 위치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무소설치승인내용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무소의 폐지) ① 이 지침에 의하여 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받은 자가 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폐지신고서에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의 폐지신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유효기간) ① 사무소의 상주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일원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주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상주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사무소 설치보고 등) ① 사무소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사무소 설치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현지 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설치행위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의 설치를 완료한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무소의 반기별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 등록증은 등록증 재발급 후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위임대리업무 처리내역
2. 주요인사 면담 및 내방내역
3. 북한기업에 대한 자문, 경제·기술자료 소개 등 활동내역
4. 주재원의 남한 또는 제3국 방문내용

5. 사무소 및 주재원의 등록증(매년마다 북한당국이 재발급하는 것에 한함)

6. 특이사항 및 기타 참고자료

③ 통일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승인의 취소 등) 통일원장관은 북한에 설치된 사무소가 설립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주재원의 감축·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 사무소 설치승인의 취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주재원의 북한방문) ① 통일원장관은 사무소 설치승인 이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소 파견 주재원이 수시로 방북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재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수시방북을 승인하는 북한방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주재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10조제1항의 서류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1부

3. 향후 1년 6월간의 방북예정서 1부

③ 수시 방북을 승인받은 경우에도 방북자는 영 제17조에 의거 매 귀환 후 증명서를 통일원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매 방북시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일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1부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사본) 또는 초청장(원본)
1부

④ 수시방북 승인을 받은 주재원은 승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방북 만료기간 30일 전에 기간연장이 필요한 사유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시방북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통일원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 방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시방북을 허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사항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외국환의 사용) 사무소의 개설, 유지활동 등에 필요한 외국환의 사용은 외국환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준용하되, 영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별도로 “특례”를 고시하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

국내기업및경제 단체 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 관한지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내기업및경제 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사무소설치승인신청서

| | | | | | |
|--|----------|--------------|--|-----|-----|
| | | 처리기간 | 30일 | | |
| 신청인 | ①상 호 | | ②설립년월일 | | |
| | ③대표자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 |
| | ⑥업 종 | | | | |
| 사무소설치내역 | ⑦설치목적 | | | | |
| | ⑧사무소명 | (국문) (영문) | | | |
| | ⑨대표자성명 | | ⑩주민등록번호 | | |
| | ⑪소재지 | | | | |
| | ⑫업무개시예정일 | 년 | 월 일 | | |
| | ⑬주재원수 | 본사파견 : 명 | 현지고용 : 명 | | |
| | ⑭영위업종 | | | | |
| <p>국내기업및경제 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무소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서류 : 1.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및 경제단체의 설립인가서 사본 1부 2. 업무활동계획서(주재원 및 현지인원 고용계획 포함) 3. 설치 및 유지활동에 소요될 외화경비명세서, 경비조달계획서 및 필요물품 반출명세서 4.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북한측 관계자와의 협의 경위 및 경과 5. 재정경제원장관의 추천서(금융기관에 한함) 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table border="1" style="width: 50px; height: 40px; margin: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없 음</td> </tr> </table> | 수수료 | 없 음 |
| 수수료 | | | | | |
| 없 음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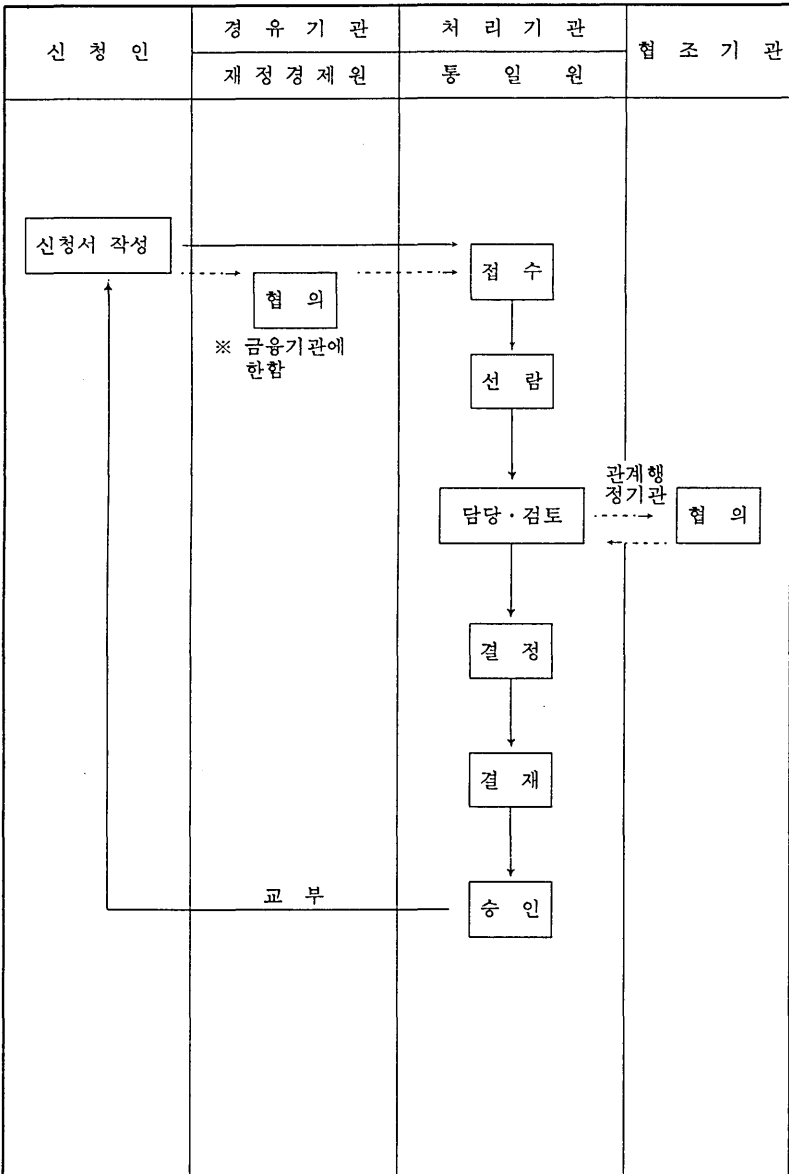
11313-03011 민
'94.12.1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사 무 소 설 치 승 인 증

| | | | |
|------|--|---------|--|
| ①상 호 | | ②대표자성명 | |
| ③업 종 | |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주 소 | | | |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무소 설치를 승인합니다.

| | | | |
|-----------------------|------------------|--------------------|-------|
| ⑥설치목적 | | ⑦승 인 번 호 | |
| ⑧사무소명 (국문) (영문) | | ⑨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⑩소 재 지 | | | |
| ⑪주재원수 | 본사파견 : 현지고용 : | ⑫활 동 내 용 | |
| ⑬상주기간 | 년 (년 월 일까지) | ⑭승 인 일 | 년 월 일 |
| ⑮승인조건 | | | |

년 월 일

통 일 원 장 관

11313-03111 민
'94.12.1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사무소설치승인내용변경신고서

| | | | | | | | |
|--|----------|-----------|---------|--------|--|--------|--|
| | | 처리기간 | 15일 | | | | |
| 신 청 인 | ①상 호 | | ②설립년월일 | | | | |
| | ③대표자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사 무 소 | ⑥사 무 소 명 | | ⑦승인번호 | | | | |
| | ⑧소 재 지 | | | | | | |
| ⑨ 변 경 내 용 | | | | | | |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 | | |
| | | | | | | | |
| <p>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 | | | | | | |
| <p>위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고 수리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고수리번호</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고수리일자</td> <td></td> </tr> </table> | | | | 신고수리번호 | | 신고수리일자 | |
| 신고수리번호 | | | | | | | |
| 신고수리일자 | | | | | | | |
| 신고수리기관 : 통 일 원 장 관 | | | 수수료 | | | | |
| | | | 없 음 | | | | |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 무 소 폐 지 신 고 서

| | | | | |
|--|--------|-----------|---------|-----|
| | | | 처리기간 | 15일 |
| 신 | ①상 호 | | ②설립년월일 | |
| | ③대표자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인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
| 사 업 | ⑥사무소명 | | | |
| | ⑦소재지 | | | |
| | ⑧업 종 | | | |
| ⑨ 폐 지 사유 | | | | |
| ⑩ 폐 지 시기 | | 년 월 일 | | |
| <p>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 | | | |
| <p>• 첨부서류 : 폐지사유에 관한 증빙서류.</p> | | | | |
| | | | | 수수료 |
| | | | | 없 음 |

11313-03311 민
'94.12.1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상 주 기 간 연 장 승 인 신 청 서

| | | | | |
|---|------------------------------|-----------|---------|-----|
| | | | 처리기간 | 30일 |
| 신 청 자 | ①상 호 | | ②설립년월일 | |
| | ③대표자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
| 사 무 소 | ⑥사 무 소 명 | | ⑦승인번호 | |
| | ⑧소 재 지 | | | |
| ⑨ 상 주 기 간 연 장 | 연 장 전 | | 연 장 후 | |
| | | | | |
| ⑩ 연 장 사 유 |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첨부 | | | |
| <p>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 | | | |
| | | | | 수수료 |
| | | | | 없 음 |

11313-03411 민
'94.12.10 승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제정 1995.6.28 재정경제원 고시 1995-23호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또는 거주자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북한지역 사무소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거주자와 외국환관리규정 제12장 제2절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한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북한지역에의 투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대북투자 업종이 금융·보험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투자의 방법) 거주자와 현지법인의 북한지역에의 투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자(이하 “대북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북한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증권 또는 출자지분 등을 취득하는 방법
2. 제1호의 법인에 대하여 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상환기간 1년 이상에 한함)을 대부하는 방법
3. 북한지역에 지점을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그 지점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는 방법

제5조(적용규정) ①제4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4조 제3호의 북한지점 및 북한지역 사무소(이하 “북한지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절 법인설립 등의 방법에 의한 투자

제6조(투자의 요건)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1.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량거래처가

아닐 것

2. 투자자가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투자수행 능력이 있을 것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1. 시설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 등 자금 운용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2.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와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정할 것
3. 투자원금 및 과실의 회수가 가능하고 이익계획이 적정할 것

제7조(투자의 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현지법인의 경우에는 그 현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의 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현지법인의 대북투자의 경우,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의 국환은행의 장은 최초 해외투자시 허가 등을 한 기관에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북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는 대북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서 사본
2. 투자에 관한 최종합의서 사본
3.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부속명세서가 있는 경우 그 부속명세서)
4.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서 사본

제8조 (의견요청) 제6조 제2항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시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투자금의 송금 등) ①대북투자신고를 한 자(이하 “대북투자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북투자자가 현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따라 물자를 반출한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투자금 등의 회수) ①대북투자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 투자의 원금 또는 과실을 현금 또는 현

물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대북투자자가 신고한 사업을 청산하거나 투자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대북투자자는 협력사업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당해 투자사업을 즉시 청산하여야 한다.

④대북투자자가 투자금액을 감액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투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감액한 투자금 또는 잔여재산을 즉시 남한에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의 종료
2. 협력사업 승인의 취소
3. 증권, 지분 및 사업 등의 양도
4. 제4조 제4호의 경우 사업목적의 달성 등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투자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제11조(대북투자의 사후관리) 재정경제원장관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여금 대북투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북투자사업 실적을 분석·검토하며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게 하는 등 대북투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서의 제출 등) ①대북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보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고서를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일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권, 지분, 대부채권의 취득 및 변동보고서 : 취득 또는 변동후 1월이내
2.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3.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 즉시
4. 청산보고서 : 청산후 2월이내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대북투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대북투자에 대한 필요조치의 시행)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현지법인인 대북투자자가 대북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7-1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 지침에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의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당해 현지법인의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직접 당해 해외투자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대북투자사업의 분석결과 경영이 부실한 대북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대북투자의 승인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재정경제원장관을 경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3 절 북 한 지 사

제14조 (북한지사의 구분) 북한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북한의 고정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북한지점”
2.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북한사무소”

제15조 (북한지사의 설치)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은 북한지사 설치의 경제적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한다.
②북한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인을 받은 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

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북한지점의 영업기금)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가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북한지점에 영업기금(당해 북한지점의 설치비·유지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 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독립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북한지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 대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북한지점의 영업기금은 당해 지점의 인정된 영업활동을 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7조 (북한사무소의 설치비) ①북한사무소의 설치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북한사무소의 설치비는 북한사무소의 설치 또는 확장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구입비 또는 임차료(장기임대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지불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

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동산집기류(자동차를 포함한다) 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3. 영선비(사무소의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를 포함한다)
4. 전화, 텔렉스 등 통신관계 설치비
5. 기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적, 지출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북한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비 지급인증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의 정산결과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18조의 유지활동비로 전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용금액은 당해 사무소의 유지활동비 지급인증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18조(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 ①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북한사무소의 활동 및 유지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북한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기본경비와 기타경비로 구

분한다.

③기본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전액을 지급하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 가스 및 수도료
2. 전신전화료
3. 동산임차료, 부동산 사용료 및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주재원의 주거용 주택임차료(기간단위로 지급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제세공과금
5. 현지인력의 고용에 따른 보수
6. 기타 북한사무소의 운영에 정기적, 필수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비

④기타경비는 제3항의 기본경비 이외의 경비로서 그 지급한도는 사무소당 월 미화 2만불 및 주재원 1인당 월 미화 1만불로 하며 경비용도에 관한 확인 및 사후관리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기타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활동비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인증일부터 180일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명하

는 증빙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기타경비 지급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9조(북한지점의 결산 순이익금의 처분등) ①북한지점을 설치한 자(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북한지점은 제외한다)는 당해 거주자의 매 회계기간별로 북한지점의 결산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와 결산결과 발생할 순이익금의 처분내역을 그 결산일부터 5월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순이익금의 처분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 결손에의 충당
2. 남한에 회수
3. 당해 북한지점의 영업기금으로의 운용

제20조(북한지사의 경비사용에 관한 유지관리의무) 북한지사는 동 지사의 영업기금, 설치비, 유지활동비 및 기타자금을 보유·사용함에 있어서 각 지사별로 독립장부를 비치하여 그 보유·사용·차입 및 대부내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북한지사예에 관한 사후관리 등) ①북한지사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지사설치를 완료한후 20일이내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북한지사가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일 부터 20일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취득 또는 처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북한지사를 설치한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반기별 영업 활동상황을 반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의 토지이용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 및 처분, 결산, 자금의 차입 및 대부, 주재원 수 등에 대하여 각 지사별로 종합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북한지사의 폐지등) ①북한지사를 폐지하거나 그 명칭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폐지 또는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북한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지사의 폐지를 재정경제원장관을 경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당해 북한지사 또는 이를 설치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2. 북한지점의 결산결과 3회계연도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

생하고 향후 이익발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3. 기타 당해 북한지사의 현지활동상황 및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이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사의 폐지신고를 하거나 폐지지시를 받은 자는 당해 북한지사의 제자산처분대전을 지사를 폐지한 즉시(폐지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폐지지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남한에 회수하고 당해 북한지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제자산처분명세서와 그 처분대전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증명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현지금융) ①거주자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에 설치한 현지법인(이하 “북한 현지법인”이라 한다) 및 북한지점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가 당해 현지금융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외국환은행의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북한 현지법인 또는 북한지점(이하 “북한 현지법인 등”이라 한다.)이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 없이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1. 거주자가 승인받은 대북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북한 및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2. 북한 현지법인 등이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 다만,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와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기업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시설투자를 위한 것일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 지급보증은행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현지금융이 북한 현지법인 등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전년도 매출실적(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초년도 예상매출액)의 100분의 4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증할 수 있다.
- ④북한 현지법인 등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 차입한 자금은 그

허가 또는 인증받은 내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및 그 차입원리금의 정당한 상환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현지금융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
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현지금융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⑥재정경제원장관의 현지금융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의 현지금융 인증을 받은 자 및 북한 현지법인 등이 거주자의 보증없이 현지금융을 받은 경우 당해 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북한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자가 현지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현지법인을 설치한 거주자)는 당해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금융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분기 첫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⑦현지금융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허가 또는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인증받은 바에 따라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북한 또는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은행의 장의 인증, 지급보증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⑧지급보증은행의 장이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보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을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재정경제원장관 및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2항의 신고 : 즉시
2. 제12조 제1항의 보고 : 1월이내
3.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사실 : 즉시
4. 제17조 제1항의 인증 : 1월이내
5. 제18조 제5항의 허가 : 1월이내
6. 제19조의 결산보고 : 1월이내
7.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8. 제22조 제1항의 신고 : 즉시
9. 제22조 제3항의 보고 : 1월이내
10.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인증, 제6항의 현지금융

대북투자등에관한외국환관리지침

의 차입 및 상환분기보, 제7항의 인증 : 1월이내
제25조 (권한의 위임)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지침 제13조,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의 일
부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南北協力基金法 및 後續法令

南北協力基金法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南北協力基金法

南北協力基金法

制定 1990. 8. 1 法律 第4240號
改正 1990. 12. 27 法律 第4268號(政府組織法)
1993. 12. 31 法律 第4675호(國債法)

第1條(目的) 이 법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에 의한 南北間의 相互交流와 協力を 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交易” 및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第2條第2號 및 第4號에 規定된 交易 및 協力事業을 말한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인 金融機關을 말한다.

第3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이 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4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の 出捐金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金

南北協力基金法

3.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개정 93.12.31>
4. 基金의 運用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第5條 (長期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投融資特別會計, 다른 基金, 金融機關등으로부터 資金을 長期借入할 수 있다.<개정 90.12.27>

②統一院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借入할 때에는 미리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90.12.27>

第6條 삭제<93.12.31>

第7條 (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統一院長官이 運用·管理한다.<개정 90.12.27>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개정 90.12.27>

③統一院長官이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金運用計劃중 經濟 및 財政·金融政策과 관련되는 重要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財政經濟院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90.12.27>

④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基金運用計劃
3. 決算報告事項
4. 기타 統一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90.12.27)

第8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使用한다.

1. 南北의 住民의 南北間 往來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文化·學術·體育分野 協力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交易 및 經濟分野 協力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金의 南韓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融資
4. 南北交流·協力を 促進하기 위하여 換錢等 代金決濟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資金을 融資해 주는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損失補填과 金融機關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指定通貨의 引受
5. 기타 民族의 信賴와 民族共同體 회복에 이바지하는 南北交流·協력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지원 및 南北交流·協力を 增進하기 위한 事業의 지원
6. 借入金 및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

南北協力基金法

償還<개정 93.12.31>

7.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

第9條(基金의 會計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 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개정 90.12.27>

②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統一院長官은 委託받은 銀行의 理事중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90.12.27>

③會計關係職員等の責任에 관한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管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10條(一時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개정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11條(보고 및 還收) ①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者에게 그 使用計劃 및 使用結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②統一院長官은 基金을 사용하는 者가 당해 基金支出目的 외에 사용한 때에는 支出된 基金의 전부를 還收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還收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한다.

第12條(餘裕資金의 運用) 統一院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개정 90.12.27>

1. 國債·公債의 買入
2.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의 預託
3. 金融機關에의 短期預置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第13條(이익 및 缺損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第14條(監督 및 命令) 統一院長官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南北協力基金法

있다. <개정 90.12.27>

附 則

이 法은 公布 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90.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 則<93.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3조 (채권의 발행)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1.2.1, 94.12.23>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채권의 이자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4조 (채권사무의 취급)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1.2.1>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1.2.1>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

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 ①통일원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2.1, 93.3.6>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2.1>

④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8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

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 (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정경제원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1.2.1〉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1.2.1〉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 (결산보고서) ①통일원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 (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원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1.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94.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27 총리령 제384호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7.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 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②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1]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제8장과 [별지 2]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제4장 및 제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 4.17 통일원고시 제91-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 3 조 (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4 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종료후 1월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위탁수수료) ①통일원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 조 (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

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용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용자를 취급한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 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제 8 조 (채무의 조정) ①통일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

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 4 장 무상지원

제 1 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 9 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0조 (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 (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 (지원절차)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14조 (지원통화) ①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15조 (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②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18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9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

서 지원한다.

제20조 (지원절차)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 (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원신청 변경)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시기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제20조제1항의 신청인은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지원방침 결정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감액지급, 지급액의 환수, 지급액의 일시환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 (지원통화) ①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25조 (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

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 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5 장 손실보조

제26조 (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다.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실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약정 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7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 받은 후 발생한 손실
-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제28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제26조제2호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이내로 한다.

제29조(손실보조 약정절차)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신

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하여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제30조(업무취급 수수료)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업무취급수수료”라 한다)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수납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손실보조약정의 효력) ①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취급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손실보조약정의 내용변경) ①피약정자가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당해 사업내용을 변경한 때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3부에 당해 내용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손실보조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1부에 승인하는 뜻을 기재·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손실보조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서의 교부전에 수수료를 추가로 수납하여야 한다.

제34조 (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①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의 개시등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35조(손실보조신청) 피약정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손실보조금 지급)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100분의 90이내에서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한다. 다만, 통일원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손실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면책) ①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금은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8조(손실보조약정 해지등) 기금은 피약정자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손실보조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9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0조(대위권) ①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42조(회수금의 납부) ①피약정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금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손실보조약정증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 1 절 경제협력사업 자금대출

제44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제45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경제협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90범위이내로 한다.

제46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출형식

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당해 관련계약이 원화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이 분할집행되는 경우에는 최종집행시까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어음대출로 할 수 있다.

2.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가. 이자율은 연5%로 한다.

나.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상환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연체대출금이자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 이자는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자금의 분할집행 등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선취할 수 있다.

3. 대출기간은 10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4. 원금상환 방법

원금은 연1회이상 정기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년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5. 담 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47조 (사전협의) ①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사전협의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필요성등에 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48조 (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49조 (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빙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대출금 상환) ①제46조제3호의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2영업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46조제2호의 나목에서 규정하는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51조(대출조건 변경) ①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실행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조건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조건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조건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에 준하여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대출조건의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제52조 (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거래의 특성, 긴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 · 반입자금대출 등

제53조 (반출 · 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 · 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 · 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 · 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③통일원장관은 반출 · 반입자금대출의 조건등을 재무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4조 (결과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 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원장 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7 장 채무보증

제55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56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57조(보증절차) ①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8 장 금융기관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58조 (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 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시 기금이 보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59조 (손실보전 신청등) ①금융기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2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60조 (보전이자율등)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 절 금융기관용자자금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1조 (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62조 (지원절차) ① 금융기관이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2부를,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63조 (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64조 (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북한원화매매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한다.

제65조 (인수조건등)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원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66조 (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원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제67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8조 (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용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9조 (지원금액·지원조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 칙

제70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1조 (기금의 출연)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72조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첨부서류 : 1. 방문자 명단 (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방문계획 (방문계획이 복잡한 경우)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방문자의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위임장 (대리인에 한함)
5.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문화
 학술
 체육 } 협력지원자금변경신청서

[별지 제 4 호서식]

| | | | |
|---|-------------|------------|-----|
| ① 신청인 | 단체명 (성명) | 한글: 한자: | 대표자 |
| | 주소 | (TEL) | |
| | 연락처 | (FAX) | |
| ② 협력사업 승인번호 | | | |
| ③ 변경신청내용 | | | |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 |
| ④ 변경신청사유 | | | |
|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변경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사업변경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후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 관련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p> | | | |
| 붙임 원장관 귀하 | | 수수료 | |
| | | 없음 | |

1106-022-004111번
91. 4. 10 승인

210 mm × 297 mm
인쇄용지(복합) 80g/㎡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문화 학술 체육 } 협력지원자금사용보고서

[별지 제 5 호서식]

| | | | |
|---|---------------|------------------|-----|
| ① 보고인 | 단체명 (성명) | 한글: 한자: | 대표자 |
| | 주소 | (TEL) | |
| | 연락처 | (FAX) | |
| | 협력사업자 승인번호 | 협력사업승인 (변경)번호 | |
| ② 협력사업 상대자 | 단체명 (성명) | 대표자 | |
| | 주소 | (TEL) | |
| | 연락처 | (FAX) | |
| ③ 협력사업 기간 | | | |
| ④ 협력사업 주요실적 | | | |
| ⑤ 자금사용총액 | | ⑥ 협력사업수익금 | |
| ⑦ 지원자금수령액 | | | |
| ⑧ 지원자금사용액 | | | |
| ⑨ 지원자금불용액 | | | |
|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1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2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p> <p>첨부서류: 1. 사업추진실적 2. 자금사용명세서 및 주요 증빙서 3.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고인 ㉠</p> <p>통일원장관 귀하</p> | | | |

1106-022-00611인
91. 4. 10 승인

210 mm × 297 mm
인쇄용지(복합) 80g/㎡

손실보조약정신청서

[별지 제 6 호서식]

| | | | | |
|---|-----------------|------------------------------|---------------------------------|-------------------------|
| ① 신청인 | 상 호 및 대 표 자 | | | |
| | 주 소 | (TEL) | | |
| | 연 락 처 | (FAX) | | |
| ② 사업 상 대 자 | 상 호 및 대 표 자 | | | |
| | 주 소 | (TEL) | | |
| | 연 락 처 | (FAX) | | |
| ③ 사업개요 | 계 약 금 액 | | | |
| | 사 업 내 용 | | | |
| | 결 제 조 건 | | | |
| | 반출, 반입 또는 사업개시일 | | | |
| ④ 손실보조 약 신청내용 | 신 청 구 분 | <input type="checkbox"/> 교 역 | <input type="checkbox"/> 경제협력사업 | |
| | 약 정 금 액 | | 적 용 환 율 | |
| | 손실보조 약정비율 | | 약 정 기 간 | |
| ⑤ 기타사항 | 남북협력기금의 용자여부 | | | |
| | 특 기 사 항 | | | |
|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29 조제 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손실보조 약정 체결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몇 면</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④</p> | | | | |
| <p>통 일 원 장 관 귀 하</p> | | | | <p>수 수 료</p> <p>없 음</p> |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4. 손실보조 약정신청액 산출명세표
5. 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6. 제작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7.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8.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9.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경제협력사업
 반 출
 반 입

자금대출조건변경신청서

[별지 제 11 호서식]

| | | | | | |
|---|----------------|---------|---|-------|-----|
| ① 차 주 | | 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TEL) (FAX) | | | | |
| ④ 사 업 명 | | | | | |
| ⑤ 대출승인일자 | | ⑥ 대출승인액 | | | |
| ⑦ 대출집행액 | | ⑧ 상 환 액 | ⑨ 대출잔액 | | |
| ⑩ 변경신청내용 | | | | | |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 |
| | | | | | |
|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반출·반입) 자금대출조건변경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대출조건 변경사유서 2. 대출조건 변경신청 관련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㉑</p> | | | | | |
| <p>통 일 원 장 관 귀 하</p> | | | <table border="1"> <tr> <td>수 수 료</td> </tr> <tr> <td>없 음</td> </tr> </table> | 수 수 료 | 없 음 |
| 수 수 료 | | | | | |
| 없 음 | | | | | |

1106-022-01111민
 91. 4. 10 승인

210mm X 297mm
 인쇄용지(복합) 80g/㎡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채 무 보 증 신 청 서

[별지 제 12 호서식]

| | | | | |
|---|----------------|--------------------|---------|-------|
| ①의뢰인 | 상 호 및 대 표 자 | | | |
| | 주 소 연 락 처 | (TEL) (FAX) | | |
| ②채무보증 신청내용 | 보 증 한 도 | | 보 증 목 적 | |
| | 수 혜 자 | | | |
| | 보 증 기 간 | - (통산 년 월) | | |
| ③사 업 명 | | | | |
| ④보증대상 채 무 | 대 출 은 행 | | 대 출 금 액 | |
| | 대 출 이 율 | | 대 출 기 간 | |
| | 원리금상환방법 | | | |
| | 상 환 재 원 | | | |
|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조제 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5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이사회기결의서 1부 3. 담보제공계획서 4.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5.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6.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p> | | | | |
| 통 일 원 장 관 귀 하 | | | | 수 수 료 |
| | | | | 없 음 |

1106-022-01211인
91. 4. 1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80g/㎡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별지 제 13 호서식]

| | | | | |
|---|------|-------|-----|-----|
| ① 신청인 | 기관명 | | 대표자 | |
| | 주소 | (TEL) | | |
| | 연락처 | (FAX) | | |
| ② 손실보전 신청내용 | 금액 | | | |
| | 대상기간 | | | |
| ③ 손실발생 사유 | | | | |
|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5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손실보전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1. 손실계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 2.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 | | | |
| 통일원장관 귀하 | | | | 수수료 |
| | | | | 없음 |

1106-022-01311민
91. 4. 10 승인

210 mm x 297 mm
인쇄용지(복합) 807/74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별지 제 14 호서식]

| | | | | |
|--|-----|-------|------------|--|
| ① 신청인 | 기관명 | | 대표자 | |
| | 주소 | (TEL) | | |
| | 연락처 | (FAX) | | |
| ② 지원자금 신청내용 | 금액 | | 지원대상 구분 | <input type="checkbox"/> 용자자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62 조제 1 항의 규 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용자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용자 취급명세서 2. 자금지원 신청조건 3.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③</p> | | | | |
| 통일원장관 귀하 | | | | 수수료 |
| | | | | 없음 |

1106-022-01411민
91. 4. 10 승인

210 mm x 297 mm
인쇄용지(복합) 80g/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북한원화매매신청서

[별지 제 16 호서식]

| | | | | |
|---|-----------|----------------|-----|-----|
| ①신청인 | 기관명 | | 대표자 | |
| | 주소 연락처 | (TEL) (FAX) | | |
| ②인수신청 금액 | 북한원화 | 금 | (|) |
| | 적용환율 | | | |
| | 원화 | 금 | (|) |
| ③보유경위 | | | | |
| ④매각신청 금액 | 원화 | 금 | (|) |
| | 적용환율 | | | |
| | 북한원화 | 금 | (|) |
| ⑤북한원화 사용계획 | | | | |
|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64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북한원화의 (인수·매각)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㉑</p> | | | | |
| 통일원장관 귀하 | | | | 수수료 |
| | | | | 없음 |

1106-022-01611인
91. 4. 10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복합) 80g/㎡

附 錄

〈남북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 북 화 해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 북 불 가 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③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 ④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 ⑤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⑥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⑦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 ⑧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⑨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⑩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

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③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④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⑤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⑦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⑧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

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

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

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

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 · 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 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③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체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합의서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교류협력관계법규집

| | | | | | |
|---|---|-------|--------|-----|---------------|
| 초 | 판 | 1991년 | 5월 | 15일 | 인쇄 |
| 재 | 판 | 1992년 | 12월 | 31일 | 인쇄 |
| 3 | 판 | 1993년 | 8월 | 25일 | 인쇄 |
| 4 | 판 | 1994년 | 7월 | 20일 | 인쇄 |
| 발 | 행 | 처 | 통 | 일 | 원 |
| | | | | | 전화 : 720-2145 |
| 인 | 쇄 | 처 | 금강문화인쇄 | | |

<비 매 품>

